

VI. 경제력집중부문

1. 대규모기업집단정책 개요

가. 기업집단(법 제2조 제2호)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이며,
-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1 이상의 회사 집단
-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 집단

※ '동일인'의 개념

- 1) 동일인은 법상 정의규정은 없으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총수) 또는 법인
- 2) 일반적으로 기업집단의 동일인은 총수가 있는 집단은 그룹총수, 총수가 없는 집단은 집단 내 주력회사임
- 3) 동일인 관련자(시행령 제3조)
 - ① 동일인의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에만 해당)
 - ②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30% 이상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단, 동일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공정위가 인정하는 경우 제외 가능)
 -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④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계열회사)
 - ⑤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계열회사의 사용인
→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을 말함

→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의미

나. 기업집단의 범위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소속회사)를 말하며, 지분을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해당여부를 판단함

※ 지분율 기준

-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자 및 계열회사 등)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의 30% 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시행령 제3조 제1호)
- 2)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 지배력 기준

- 1) 동일인이 다음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3조 제2호)
 -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 또는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 ③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등의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 ④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 또는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 ⑤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구분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합계액에 따라 기업집단 규제정책을 달리 적용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기업집단 대립'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임 (자산총액 18.7조원, 2020년 기준)

※ 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외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연도 중 지정 제외 (시행령 제21조 제9항)

- 1) 회생절차 또는 관리절차 진행 중인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집단 전체 자산총액의 50%이상이고, 이들 외 자산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3.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7조원 미만인 경우
- 2) 소속회사 변동으로 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3.5조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 (법 제3조의2)

- 1) 출자자간의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사실상 동일인의 지배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
- 2)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 3) 기업집단내 임원이 해당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사

- 4)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5)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
-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 그 밖의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법인
- 8)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으로서 해당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 기업집단으로부터의 유예 (법 제3조의2 제2항 제2의2호)

-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부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된 실시계획에 따른 사업완료하여 준공확인 전

마.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정책

공시대상기업집단 : 기업집단 현황 공시 등(비상장공시, 대규모내부거래공시 포함)
공시자료를 작성하고 공시할 의무가 있는 회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외에 상호출자, 채무보증, 의결권 제한 등의 추가 규제 대상인 회사

※ 공시·공개 제도

- 1)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는 제외 ('청산중'은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 선임결의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휴업 중'은 세무서에서 휴업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를 말함)
- 2) 기업집단 현황공시 (법 제11조의4)
 - ①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이사회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의 기업집단에 관한 정보를 포괄적으로 공시

② 공시시점 : 매 분기종료후 2개월 이내 기준 (기업 일반현황은 연1회)

3)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법 제11조의3)

① 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는 수시로 자기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 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

② 공시시점 : 공시사유발생일 7일 이내

4)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 제11조의 2)

① 기업집단내 소속회사간 대규모내부거래* 하고자 하는 때에 이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사회 의결 후 해당사실을 공시

② 공시시점 : 거래발생전, 이사회 의결후 1일이내(비상장법인은 7일 이내)

* 대규모내부거래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

* 금액기준 : 건별 거래금액(상품·용역거래의 경우 분기에 이루어질 거래금액의 합)이 (1)그 회사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이상이거나 (2)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

※ 상호출자금지 제도 (법 제9조)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상호간에 투자 또는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하는 것을 금지. 단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 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의 수령의 경우는 당해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의 해소 유예기간 부여

2) 신규지정집단(또는 기업집단으로 편입)에 따라 발생한 상호출자는 지정일(또는 편입일)로부터 1년간 유예 (법 제14조 제3항)

※ 신규순환 출자금지제도 (법 제9조의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3개 이상의 계열회사간 출자가 고리와 같이 상호연결된 신규순환출자(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형성 및 기존의 순환출자고리를 강화하는 추가출자)를 금지

- 2) 단, 기업의 사업구조개편(합병·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등), 정당한 권리행사(담보권 실행 등) 및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자율협약 절차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채권단 의결 등)에 대해 예외사유에 따라 6개월 ~ 3년의 해소유예기간 부여

※ 채무보증제한 제도 (법 제10조의2)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회사(금융·보험사 제외)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를 금지
- 2)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채무보증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한 채무보증은 제외함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법 제11조)

-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
- 2) 단,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및 보험업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의결권 행사 가능하며, 상장 계열회사의 임원임면, 정관변경, 합병·영업양도에 대한 결의 시에는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지주회사제도 (법 제8조 및 제8조의2)

- 1) 지주회사란 주식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이며,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회사
- 3) 지주회사체제에 수반되는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면서 단순·투명한 출자구조가 유지되도록 출자단계 및 지분을 규제, 상호·순환출자 금지 등 제도적 장치를 구비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금지

- 1)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상장회사 기준,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 금지
 -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과 현금, 그 밖의 금융상품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2.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가. 도입배경

- 1) 경제력이 소수의 경제주체에게 집중될 경우 시장경제의 핵심인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 2)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과 시장경쟁 저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는 한편 공정한 시장경쟁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적용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을 지정

나. 관련근거 및 지정시기

- 1) 지정근거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법 제14조 제1항)
- 2) 지정시기
 - 매년 5월 1일(부득이한 경우 5월 15일까지) (시행령 제21조 제4항)

다. 지정기준

- 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이 5조원 (또는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통지함 (법 제 14조 제1항)
- 2)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라. 지정자료 제출

- 1) 공정위는 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집단은 이에 따라 제출해야 함 (회사의 일반현황, 회사의 주주 및 임원 구

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회사, 감사보고서, 기타 자료 등)

- 2) 위반 시 제재 :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법 제67조)

3. 공시·공개제도

가. 기업집단 현황공시 (법 제11조의 4)

- 1)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 통지일부터 적용

- 2) 공시사항

① 연1회 공시사항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소유지분현황,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관리 및 자문 용역 거래 현황, 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계열회사간 채권·채무 잔액현황, 계열회사간 순환출자현황,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 등

② 분기별 공시사항 :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현황·유가증권 거래현황·기타 자산 거래현황·채무보증 현황·담보제공 현황, 순환출자 변동내역,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여부 등

- 3) 공시시기 및 방법

① 공시시기

- 연1회 공시사항 : 매년 5월 31일

- 분기별 공시사항 : 매년 2월 28일 / 5월 31일 / 8월 31일 / 11월 30일

- ②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
- 공시양식에 기재할 내용이 없을 경우 해당 공시양식을 삭제하고(혹은 양식 안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공란으로 두면 안됨(미공시에 해당할 수 있음)
 - 공시양식의 칸 또는 줄에 기재할 사항이 없으면 "-"으로 기재
 - 공시 대상 회사가 12월말 결산 법인이 아닌 경우, 회사의 결산일에 맞춰 공시내용 조정 가능 (예. 11월말 결산 법인인 경우 1/4분기 공시(5.31)는 12월부터 2월말까지 결산한 내용을 공시)

4) 위반시 제재 (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 과태료 부과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나.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공시 (법 제11조의3)

- 1)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주권 비상장법인
- 2) 공시사항
 - ①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동현황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 ② 회사의 재무구조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 비유동자산 취득·처분 결정사항
 - 다른 법인(국내·외 계열회사를 제외한 국내·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결정사항
 - 증여 또는 수증,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제외) 결정사항
 -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결정사항, 증자 또는 감자 결정사항,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결정사항

③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 상법 제374조(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제527조의2(간이합병), 제527조의3(소규모합병),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사항
- 상법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결정사항, 상법 제360조의15(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사항
- 상법 제517조(해산사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 결정사항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7조(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점검)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종료 결정사항

3) 공시시기 및 방법

① 공시시기

- 공시사항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초일불산입)

※ 단, 임원변동현황 공시는 분기 공시(등기일 속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7일 이내에는 공휴일도 포함되며, 7일째 되는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 공시사유발생일은 다음을 의미

-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의 변동이 있을 때
- 임원의 변동의 경우에는 등기한 날
- 회사의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있을 때

②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4) 공시양식 및 다른 법률과의 공시내용 중복

① 공정거래법상 공시사항이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사항과 중복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하면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사항에도 해당되는 사항임을 표시하여야 함

→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공시되는 사항은 제외

※ 공시양식이 내부거래공시와 동일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로 같음하고 기타 란에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사항에도 해당됨을 표시

※ 두 공시 간의 양식이 상당히 유사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를 하면서 내부거래 양식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을 추가 기재할 수 있음

5) 위반시 제재 (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 과태료 부과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여부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1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1,000

다.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법 제11조의 2)

1)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 연도 중에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편입 통지일부 터 적용

2) 공시대상 거래유형

① 공시대상 거래규모 :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의 자본금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② 자금·유가증권·자산을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함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 담보제공 : 담보한도액

- 보험계약 :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퇴직연금 등)는 보험금으로 공시 금액기준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공시대상 1건 거래행위에 해당
 -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③ 상품·용역을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거래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위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공시해야 함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의 범위
 -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이하 "A"라 함)
 - A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이하 "B"라 함)
 - A와 B간 상품·용역거래시 A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없음(단, B는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지분 20% 미만의 계열사일 경우)
 - 국외계열회사와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유예
 - ※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매입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 (단,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용역거래인 경우에는 양 당사자 모두가 상품·용역거래 거래금액으로 봄)
- ④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 ⑤ 대규모 내부거래로 보지 않는 경우
- 공시대상 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새로운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행위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용역 및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
용이나 카드결제
-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거래단가, 이자율 등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없는 행위
 - ※ 주식을 계열증권사를 통해 장내시장에서 거래하는 경우(다만, 장
종료 후 시간외거래는 공시대상)
 - ※ 자산운용사와 계열증권사간 수익증권 위탁판매계약 체결

3) 공시사항

- ① 내용 :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
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경쟁입찰·수의계약 등 계약체
결방식(상품·용역 거래)
- ②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공시여부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있는 경우 :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 계약서상의 자동연장 조항은 조건이 명시되지 거래기간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계약서상 자동 연장조항이 없는 경우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되는 경
우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없음
 -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장기간 방치하여 사실상 계약연장의 효과
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 ③ 주요내용의 변경
 -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 : 거래금액, 거래단가, 약정이자율 등이 당초
보다 2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거래금액 및 조건의 변경으로
보며, 이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하여야 함

- 거래목적, 거래대상, 거래상대방의 변경 : 거래상대방 변경의 경우 상호 변경, 영업양수도, 합병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공시만 하면 됨
- 기타 계약기간 변경 등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④ 특례 - 상품·용역거래

- 상품·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분기 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상품·용역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공시
- 거래금액 20% 감소시,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 공시 (다만,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에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에 대해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다만, 이사회 의결 시점에 계약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 건별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거래대상, 거래금액 등에 대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

4) 공시시기 및 방법

① 공시시기

- 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후 1일 이내
 - 비상장법인은 이사회 의결후 7일 이내
- ※ 공시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공시

② 공시방법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5) 위반시 재제 (법 제16조 및 제69조의2) : 과태료 부과

위반유형				과태료금액 (단위: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누락 또는 허위 공시 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공시기한까지 공시한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 한 사항을 공시기한 이 지난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 송일 전날까지 보완 한 경우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2,000
		공시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 또는 허위 공시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서 발송일 전날까지 보 완한 경우를 포함한다)	500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10만원씩 가산하되,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5,000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시하지 않은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하지 않은 경우	5,000
		-	누락 또는 허위 공시한 경우	7,000

4. 상호출자금지 제도 (법 제9조)

가. 도입배경

- 계열회사 간 가공자본 형성을 통한 계열 확장 억제와 소유지배구조 왜곡 방지를 위해 도입('87년)

나. 제도 내용

- 1)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
- 2)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동

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금지

3) 예외 : 불가피한 경우 상호출자 인정

①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②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 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 등

※ 단,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개월 이내에는 양 회사 중 하나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 (법 제9조 제2항)

4) 위반시 제재

①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②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불가

③ 과징금(위반행위의 10% 이내) 및 벌칙(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다. 위반사례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대」 소속회사 (주)현대에쓰앤에쓰의 상호출자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6-099호)

- (주)에이치애비뉴엔컴퍼니가 2004.3.12 계열회사인 (주)현대에쓰앤에쓰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주)현대에쓰앤에쓰는 2007.2.14~2014.5.20 총 3회에 걸쳐 (주)에이치애비뉴엔컴퍼니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함

- (주)현대에쓰앤에쓰는 2016.3.21 친족 독립경영을 인정받아 기업집단 「현대」에서 제외되어 위반행위가 해소

5. 신규순환 출자금지제도 (법 제9조의2 등)

가. 도입배경

- 계열회사 간 순환출자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왜곡, 부실계열사 지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14.07 시행)

나. 제도 내용

- 1)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회사 포함)
- 2) 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신규 순환출자 또는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출자를 금지
- 3) 예외 :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 등 정상적 기업활동에 대해서 예외 인정
 - ① 회사의 합병 분할, 영업전부의 양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 (6개월)
 - ② 담보권의 실행, 대물변제 수령 (6개월)
 - ③ 주주배정방식 증자 참여시 실권주 인수 (1년)
 - ④ 워크아웃 자유험약 절차 개시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재산출연 등 (3년)

※ 각 사유별 유예기간 이내에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함
- 4) 위반시 제재
 - ①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처분, 법 위반사실의 공표 등 필요조치
 - ②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불가
 - ③ 과징금(위반금액의 10% 이내) 및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6. 채무보증제한 제도 (법 제10조의2)

가. 도입배경

- 계열회사 간 상호채무보증으로 인한 동반부실화의 위험 방지를 위해 도입 ('93년)

나. 제도 내용

- 1)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
- 2) 채무보증의 개념
 -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과 관련하여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금융보험회사 제외)가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증

3) 제외

- 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 관련 보증
- ②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된 채무보증

4) 특례

-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 간 유예기간 부여

5) 위반시 제재

- ① 관련 채무보증의 취소 등 시정명령
- ②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10% 이내 과징금
- ③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다. 위반사례

- 1)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 「한라」 소속 (주)한라의 채무보증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6-032호)
 - 피심인 (주)한라는 2010.11.16 계열회사인 (주)케이에코로지스(2013.2.1 계열편입)와 서울보증보험 사이에 체결된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주)한라는 (주)케이에코로지스에 대한 연대보증을 함. 보증내용은 동탄물류단지 개발사업과 관련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개발로 인한 복구비 예치금 보증 (보험기간 : 2010.10.26~2016.12.31)
 - 신규 계열회사로 편입된 경우 편입일로부터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나, (주)케이에코로지스가 기업집단 「한라」의 소속회사로 편입후 유예기간 (~2015.1.31)이 지난 2015.8.17에서야 해소함

7.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제도 (법 제11조)

가. 도입배경

- 대규모 기업집단이 금융보험회사를 통해 고객자금으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87년)

나. 제도 내용

- 1) 적용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에 속하는 업종

- 2) 내용 : 취득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금지

- 3) 예외

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 금융보험사가 금융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을 얻어 주식을 취득, 소유한 경우. 상장 등록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5%까지 의결권 행사 가능

→ 임원임명, 정관변경, 다른 회사로의 합병 및 영업양도에 대하여 결의하는 경우

*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 우선주, 자사주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불포함

- 4) 위반시 제재

①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8. 지주회사제도 (법 제8조 및 제8조의2)

가. 도입배경

- 1)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를 통해 독립 투명경영 강화 등으로 자본시장의 평가 개선을 위함
- 2) 출자고리 단순화로 부실 자회사 퇴출 및 신규사업 진출 용이해짐에 따라 기업경쟁력 제고 및 유효경쟁 촉진을 위함

나. 지주회사

- 1) 내용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Holding Company)란 주식의 소유를 통해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2) 조건
 - ①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
 - ② 자회사 주식가액의 총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 3) 지주회사의 구분
 - ① 피지배회사의 사업성격 : 일반지주회사 vs 금융지주회사
 - ※ '기업집단 대림'내 지주회사는 대림에너지 ('20년 기준)
- 4) 지주회사 행위제한
 - ① 지주회사 부채비율(부채총액/자본총액)을 200%로 제한
 - ② 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회사 기준,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 ③ 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④ 일반(금융)지주회사의 금융회사(일반회사) 주식소유 금지
 - ⑤ 비계열사 주식을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행위 금지. (단,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5% 미만인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적용을 제외)

다. 자(손자)회사

- 1) 개념 : 지주(자)회사에 의해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회사
- ※ 지배의 기준

- 지주(자)회사의 계열회사일 것
- 지주(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

2) 행위제한 규정

- ① 자회사는 손자회사 지분을 발행주식 총수의 40% (상장회사 기준, 공동출자법인의 경우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 금지
- ② 자/손자회사는 손자/증손회사 외 계열회사 주식소유 금지
-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는 금융회사 지배 금지

라. 증손회사

- 개념 : 손자회사가 100% 주식을 보유한 회사

마. 위반시 제재

- ①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 시정조치
- ② 위반 사유별 산정된 금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의 과징금 부과
- ③ 행위제한규정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④ 신고 또는 자료제출 의무위반시, 1억원 이하 벌금

9.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금지 (법 제23조의2)

가. 도입배경

-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의 금지 ('15년)

나. 제도 내용

- 1) 적용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지원 행위
 - *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이 20%(비상장법인, 상장법인은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회사
- 2) 내용 : 금지행위

- ①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단, 정상가 대비 7% 미만 + 해당연도 거래총액 50억(상품용역 200억) 미만인 거래 제외)
- ② 회사가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 제공행위
- ③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 (단, 해당연도 거래총액 200억 미만 + 지원객체 평균매출액의 12% 미만 거래 또는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 거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거래 제외)

3) 위반시 제재

- ① 지원주체(기업집단내 계열회사): 시정명령, 3개년 평균 매출액의 5% 또는 20억원 이내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또는 2억 이하 벌금
- ② 지원객체(특수관계인): 시정명령, 3개년 평균매출액의 5% 또는 20억원 이내 과징금
- ③ 지시관여자 : 시정명령,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10. 기업결합 (법 제7조 및 제12조)

가. 도입배경

- 분산투자 효과로 투자위험을 감소시키고, 기술혁신, 시장의 변화 등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결함을 통한 규모의 경제달성으로 비용을 절감시키는 등의 효과를 위함

나. 내용

1) 개념

- 개별기업의 독립성이 소멸되고 사업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이 통합되는 기업간 자본적·인적·조직적 결합

2)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① 신고대상

- 신고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회사
- 상대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
- 자산·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 발생

※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자산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정

② 신고기한

구 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	계약일 완료후, 이행완료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주총(이사회)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외의자	주식취득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3) 기업결합 유형

① 거래관계형태에 의한 분류

- 수평결합(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 기업결합)의 경우,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상황, 결합당사회사 단독의 경쟁제한 가능성,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신규진입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수직결합(원재료의 생산에서 상품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 결합)의 경우, 시장의

붕쇄효과,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의 경우, 잠재적 경쟁의 저해 효과, 경쟁사업자 배제효과, 진입장벽의 증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② 결합수단에 의한 분류

- 주식취득·소유 : 다른 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비상장회사 기준, 상장회사 15%) 이상 취득 또는 소유하게 되는 경우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4) 간이심사 대상

- ① 특수관계인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 「상법」 제53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5) 예외

- ①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결합으로서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6) 위반시 벌칙

- ① 당해 행위의 중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등

시정조치

- ②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한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는 매1일당 일정금액(최대 결합금액의 0.03%) 범위내에서 강제이행금 부과
- ③ 기업결합 신고(허위신고 포함) 위반시 사업자는 1억원 이하, 임직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④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다. 기업결합 심사

1) 개념

- ①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모두 금지되므로, 공정위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함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집중도 변화, 진입용이성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
 - 심사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신고회사에게 통지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쟁제한성을 치유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부과
 - 신고 후 30일내(90일까지 연장 가능)에 심사하도록 규정

라. 위반사례

- 1) 의왕도시공사의 기업결합신고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15-230호)
 - 피심인 (주)동방은 (주)선광, (주)우진공사, 우련통운(주)와 인천항 신국제여객 터미널 시설관리(시설 임대)를 위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를 설립(2018.6.22)하고 기업결합을 신고함('2018.7.23)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는 (주)동방, (주)선광, (주)우진공사, 우련통운(주)(이하 '결합 당사회사')가 각 1인씩 지명한 총 4인의 이사로 이사회 구성되는

점, 대표이사는 각 회에서 임명한 이사들이 순번에 따라 담당하는 점, 주주총회 또한 일반적인 사항은 주식의 75% 찬성으로, 중요한 사항은 100% 찬성으로 의결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4개사가 공동의 지배관계를 형성한다고 판단

-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와 결합 당사회사는 생산과 유통과정에 원재료 의존관계에 해당하는 성격이 존재하므로 '수직형 기업결합'으로 분류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
- 인천항 카페리 터미널 하역시장에서 결합 당사회사의 점유율이 100%이며,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주)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시설 전부를 30년간 임차하였으므로 시장점유율이 100%임. 결합 당사회사는 자신들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설회사를 통해 신규진입을 시도하는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봉쇄할 우려가 있으며, 결합 당사회사 사이에 중요한 정보교환 및 상품의 표준화가 일어나는 등 암묵적인 공모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
- 결합 당사회사 상호간 하역요금, 하역에 소요된 시간, 화물의 양·종류·화주명 등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할 수 없도록 주주간 협약서에 명시하고, 타 항만운송사업자가 인천항 신국제여객터미널에서 하역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설의 임차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결합 당사회사에게 적용한 조건보다 불리한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시정명령
-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독립적인 감사기구 등 외부통제장치 마련하여 매년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